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탈북자 인식 개선 교육 시행 제정 법률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 의견서 2부
 2. 청 원 서 2부. 끝.

2011년 8월 5일

청 원 인

성 명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인권상임위원회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1 금영빌딩 12층

전화번호 : 070-8701-2223

소 개 의 원 :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인권상임위원회 의원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1 금영빌딩 12층
	성명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인권상임위원회
건명	탈북자 인식 개선 교육 시행에 관한 법률
소개년월일	2011년 8월 5일
<p>소개의견</p> <p>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의 수는 2만명이 넘는 시점이지만, 탈북자를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선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 탈북자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고 또한 그 교육을 탈북자들이 직접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교육하게 함으로써, 실업 문제 해결도 기대할 수 있다.</p> <p>청소년 의회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p> <p>제 1조(목적) : 이 법안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탈북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으로, 우리 사회에서 탈북자가 소외되지 않게 함으로써,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탈북자라 함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청소년들의 탈북자 인식 개선 교육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탈북자에 대한 시선을 바로 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 교육이란 북한 청소년들의 실태를 잘 파악하여 이를 전달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4. 여기서 탈북자 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란 비디오 시청, 탈북자 강사 초청 강연, 문화 교류체험 등을 말한다. 	

제 3조(운영 및 지원) : 국가 및 교육과학기술부는 청소년들의 탈북자 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국가는 교육과학기술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조(탈북자 인식 개선 교육) : 전국 시, 도 교육청은 각 학교마다 청소년들의 탈북자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 수업시수 중 일부를 청소년들의 탈북자 인식 개선 교육에 배정하도록 한다.

1 항. 여기서 말하는 학교의 범위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를 말한다.

2 항. 초등학교, 중학교는 1년 중 최소 7시간, 고등학교는 1년 중 최소 5시간의 탈북자 인식 개선 교육이 각 학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제 5조(강사 임용) : 교육과학기술부는 강사 교육을 이수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탈북자 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 선발하도록 한다.

제 6조(보상) : 청소년들의 탈북자 인식 개선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학교에 대하여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가산점을 부여하고 명예패를 수여하도록 한다.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소개의견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의 수는 2만명이 넘는 시점이지만, 탈북자를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선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 탈북자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고 또한 그 교육을 탈북자들이 직접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교육하게 함으로써, 실업 문제 해결도 기대할 수 있다.

□ 기본골자

가. 이 법안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탈북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으로, 우리 사회에서 탈북자가 소외되지 않게 함으로써,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국가 및 교육과학기술부는 청소년들의 탈북자 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국가는 교육과학기술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전국 시, 도 교육청은 각 학교마다 청소년들의 탈북자 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 수업시수 중 일부를 청소년들의 탈북자 인식 개선 교육에 배정하도록 함

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강사 교육을 이수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탈북자 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 선발하도록 함

청소년의회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조(목적) : 이 법안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탈북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으로, 우리 사회에서 탈북자가 소외되지 않게 함으로써,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탈북자라 함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청소년들의 탈북자 인식 개선 교육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탈북자에 대한 시선을 바로 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 교육이란 북한 청소년들의 실태를 잘 파악하여 이를 전달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4. 여기서 탈북자 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란 비디오 시청, 탈북자 강사 초청 강연, 탈북자 아이들과의 만남 등을 말한다.

제 3조(운영 및 지원) : 국가 및 교육과학기술부는 청소년들의 탈북자 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국가는 교육과학기술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조(탈북자 인식 개선 교육) : 전국 시, 도 교육청은 각 학교마다 청소년들의 탈북자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 수업시수 중 일부를 청소년들의 탈북자 인식 개선 교육에 배정하도록 한다.

1 항. 여기서 말하는 학교의 범위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를 말한다.

2 항. 초등학교, 중학교는 1년 중 최소 7시간, 고등학교는 1년 중 최소 5시간의 탈북자 인식 개선 교육이 각 학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제 5조(강사 임용) : 교육과학기술부는 강사 교육을 이수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탈북자 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 선발하도록 한다.

제 6조(보상) ; 청소년들의 탈북자 인식 개선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학교에 대하여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가산점을 부여하고 명예패를 부여하도록 한다.